

청주지방법원 2024. 11. 28 선고 2024가단3619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11. 7.

판 결 선 고 2024. 11. 28.

주 문

-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남동희

별지